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 기반 신입직원 채용공고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금융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대졸수준(정규직) 48명 및 고졸(정규직) 2명

(명)

※ 채용구분별(행정·전산) 중복지원 절대 불가 ※						
구 분			행정		전 산	합계
		경영	경제	법		
	수도권	9	8	2	4	23
대졸수준	비수도권	7	7	1	4	19
트버저허	장애		3		1	4
특별전형	보훈	1 1				2
그조ㅂㅁ	수도권	1			1	
고졸부문 	비수도권	1				1
	총	계				50

- * 모집분야별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작거나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문은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단, 1차 필기시험은 적용 제외)
- * 2차 면접은 행정 부문의 경우 필기시험 전공 과목별 채용예정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면접전형 결과 순위에 따라 합격자 선정
- * 전형별 합격자중 채용목표제(이전지역 인재) 채용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 만큼 추가합격 (합격하한선 적용)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 최종학력을 허위로(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고등학교까지만 입력 등) 기재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18.11월말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 단, 현재 군복무중인 자 중 근무시작 전에 전역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채용금지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도권/비수도권

구 분	지원자격
수도권	■ 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서울, 경기, 인천, 해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 고등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비수도권	■ 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수도권 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지역)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 고등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제외 후 최종학력 여부 판단

□ 특별전형

○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 전형별 가점 부여)

□ 고졸부문

- '19.2월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당 1명 이내 추천**)
-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의 내신성적이 2등급* 이내
 - * 산식 = Σ (과목별 내신등급 \times 과목별 이수단위) \div 총 이수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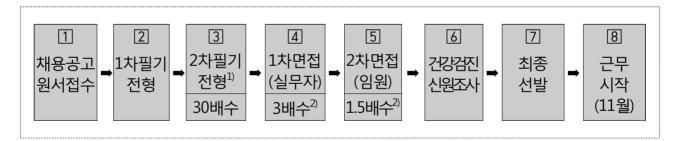
3. 원서접수

- □ 접수기간 : 8.22(수) ~ **9.5(수) 18:00**
 - ※ 마감시간(18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실 것
 -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하실 것
- □ 접수방법 :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f.trns.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4. 전형절차

① 대졸 수준

□ 전형절차 개요



- 1) 2차 필기전형에서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는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2) 소수점은 올림 처리, 특별전형의 경우 1차면접 5배수, 2차 면접 3배수 운용

□ 서류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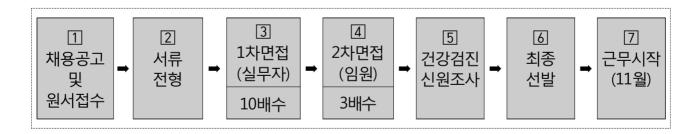
-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2차 필기전형에서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예정
 - * 직무 적성기술서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을 기재 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항목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 기재자

□ 필기전형 (부산/서울)

구분	시험과목	대 상		시험과목 대 상 범 위		출제방식	배점
1차 (9/15)	금융(경영) 경제능력평가	공	분통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100문항	100점	
2차 직무수행 (10/20) 능력평가				경 영	경영 직무능력	OX 10문항	
		행 정	경 제	경제 직무능력	단답형 10문항	100점	
		법	법 ¹⁾ 직무능력	약술 2문항	100日		
		전	! 산	전산 직무능력	논술 1문항		

- 1) '법' 과목의 출제범위는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한함
- 난이도 및 출제범위
 - 필기전형 출제 난이도는 4년제 대학학력 수준
 - 1차 필기전형은 단순 금융경제상식으로만 출제하고, 2차 필기전형은 공사 또는 공사업무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출제
- □ 1차 면접(실무자)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검증면접 *
 - * 심층 다대일 면접(150점), 집단토론(50점)
- □ 2차 면접(임원): 인성 및 직무능력 검증면접 (15점 만점)
- □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선발

② 고졸 부문



- □ 서류전형 : 학교 성적(50점), 생활기록부(25점) 및 자기소개서(25점)로 평가
- \Box 1차 면접(실무자)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검증 면접 *
 - * 다대일면접(100점), 집단토론(50점)
- □ **2차 면접(임원)**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증면접 (15점 만점)
- □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선발

5.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8.22(수) ~ 9.5(수)	
1차 필기전형	9.15(토)	_ . 전형절차 및 일정은
1차 필기전형 및 고졸부문 서류 전형 결과	9.19(수)	공사사정에 따라
2차 필기전형	10.20(토)	다소 변동 가능 (변경된 일정은 공사
2차 필기전형 결과	10월말	채용홈페이지 등에
면접전형	11월 2주~4주	사전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입사일	11월말	

^{*} 각 전형별 결과 발표는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통지 예정

6. 제출서류

-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입사 후 발견시 즉시 징계 해고)
 - * 특히, 지원자 중 최종학력을 허위로(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비수도권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입력하는 등) 기재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 (고졸부문) 입사지원 시 다음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1차 면접 시 원본으로 제출
 - ① 학교장 추천서*
 - * 별도 양식 없으며, 추천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개인식별정보, 졸업예정일, 평균 내신등급 필히 포함)과 구체적인 추천사유 기술
 - ② 학교생활기록부
 - ③ 성적증명서

- □ (공통사항) 1차 면접전형 시 아래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① (공통)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② (공통) 주민등록초본(지원자격 확인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은 반드시 병적사항 포함,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 예정증명서
 - ③ (공통) 전문자격증 소지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은 면접 당일 지참
 - ④ (비수도권 지원자)채용할당제(비수도권 인재) 및 채용목표제(이전 지역 인재)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상 최종학력의 학교 소재지 증빙자료
 - *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 제적 증명서 (택일,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 중퇴로 입력한 경우)
 -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력을 고졸로 입력하거나 고졸부문 지원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증명서' (지원자 중 최종학력이 고졸이하 및 대학교 중퇴인 지원자에 한함)

7. 근무조건 등

□ 근무조건 및 처우

○ 채용형태 : 정규직(별도 수습, 인턴기간 없음)

○ 급여조건 : 연봉 4천만원*(성과급 제외)

* 고졸부문은 대졸수준의 70% 수준

○ 근무지역 : 본사 및 전국 지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8. 우대 사항

- ※ 중복적용 가능(다수 전문자격증은 중복적용 불가)하나, 전형단계별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 모든 우대내역은 가점을 제외한 전형별 최종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 시 미적용 (이전지역 인재 우대는 합격하한선 기준 중복 적용)

< 채용 우대내역 요약 >

구 분 [*]	우대사항		ш¬	
T E	필기	면접	비고	
보훈대상자	0	0	매 전형 5%~10%	
장애인	0	0	매 전형 10%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자녀)	0	0	매 전형 5%	
 전문자격증	0	-	필기전형 3%~5%	
2018년 상반기 우수인턴	-	0	면접전형 3%	
비수도권 인재	0	0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이전지역 인재	0	0	채용목표제(전형별 18%)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 운영

- 매 전형별로 장애인은 만점의 10%,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자녀)는 만점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는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필기전형에 한하며, 전산은 우대 없음)
 - (행정, 5점 가점)회계사(KICPA), 세무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노무사
 - (행정, 3점 가점) AICPA, CFA, FRM(GARP)*
 - * 실무경력은 불필요하며, 각 자격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우대대상에 포함 (예시 : CFA는 level3 합격자, FRM은 part2 합격자 등)
- □ **2018년 상반기 우수인턴 가점 운영**(면접전형 만점의 3%)
 - 공사가 발급한 우수인턴증을 수여받은 지원자에 한함.

- □ 채용할당제(비수도권 인재) 및 채용목표제(이전지역 인재)
 - 비수도권 인재 우대를 위해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실시
 -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이전지역(부산)인재(특별 포함)의 합격비율이 해당 전형의 전체(수도・비수도・특별) 합격예정인원의 18% 이상(올림) 으로 채용
 - 미달 시 합격선(합격자 중 최하위 점수) 기준 만점의 5% 범위 내 이전지역(부산)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합격
- □ 공사 인턴경험자, 논문경진대회 수상자 등은 입사지원서 「직무관련 경험 사항」에 기재 시 우대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9. 채용설명회 개최

□ 채용설명회 개요

일 시	장 소	비고
8.29(수)~30(목)	(서울) 동대문 DDP 알림1관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9.3(월)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1층 김관음행홀	14:00 - 16:00

10. 기타사항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매 전형시 신분증 지참 *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에 한함	
□ '18.11월말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유예	불가
□ 2차 면접에 합격된 경우에도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결과에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따라

필기 및 면접선형 결과 석격자(반점의 40% 미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차필기전형은 제외)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제출서류 반환은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명시 예정
본 계획(절차 및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u>https://hf.trns.kr</u>) 이용
채용금지자(당사 인사규정 제1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